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와 역할 분담

조직확대 보강 寄與度높여

韓國漁港協會 附設漁港漁村開發研究所

어느 조직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하루 아

침에 완벽한 변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변신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맞았을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상실하면 그 조직이나 단체는 결국 도태하고 만다.

이는 끊임없이 변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대 사회의 생리이자 원리이다. 변신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도전이자 모험이지만 이의 성공으로 얻어지는 수확은 의외로 큰 것이기에 더욱 그러한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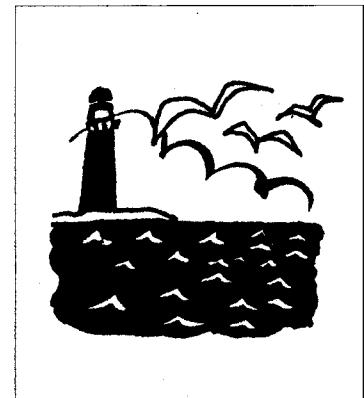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한국어항협회는 변신을 위한 매우 중대한 호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어항법에 따라 현재의 협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정법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물론 협회가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완전한 새로운 단체로 탈바꿈하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무리가 따르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직과 인력의 보강에서부터 정부 기능의 수행 및 사업확대와 활성화는 한국어항협회가 당면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한국어항협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할는지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제시해 보기로 한다.

사실 오늘날의 어항개념은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종래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예컨데 과거 우리가 통상 '어항' 하면 어선 정박항 정도의 개념으로 인식돼 왔던 것이 이



제는 지역사회의 핵으로 나아가 심지어 국민 휴양지로까지 확대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어항개발을 촉진시키는 측면의 중요성만큼 어항관리측면 또한 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선 먼저 현재의 협회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에 걸맞는 인력 역시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력 충원하

면 단순한 사무직 직원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어항의 기본조사에서부터 설계·건설·감리에 이르기까지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포함하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으로 어항발전을 위한 정부와 협회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차제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름아닌 정부 업무의 위임 또는 이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어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 조직 구조상 여기에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엔 인력이라든지 정부조직의 특성상 여러가지로 제약이 너무도 많다.

따라서 이제 법적 근거로 마련된 이상 어항관리업무부 터라도 이를 과감히 한국어항협회에 위임함으로써 어항관리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것은 어항발전을 위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왕 법정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는

기틀을 정부가 마련해준 이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국어항협회의 육성의지를 많은 어항인에게 천명하는 것이 되도록 일거양득의 의미도 갖게 된다.

끝으로 어항관련사업의 확대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협회의 성격상 지극히 제한된 업무만을 추진해온 점이 없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은 협회가 활동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었으니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그 콜레를 벗겨 되었으니 정부와 어민, 정부와 시공회사의 중간자 입장에서 종래에 할 수 없었던 사업을 과감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

었다.

우선은 내년에 이미 책정된 2억원의 용역사업부터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협회의 능력을 과시하도록 할 것이며, 기술개발, 국민에 대한 홍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협회를 어항인 모두가 체감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한가지 덧붙일 것은 어떤 측면에서 비장한 각오와 자세로 결의를 다지는 협회에 대한 어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자칫 이 모든 것이 모래위에 누각을 짓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어항인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편협한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서 이제 어항인 모두는 자유로워져



야 할 것이며, 어항인 스스로
부터 2천년대의 어항산업과
수산대국의 상태를 바라보는
대국적인 혜안을 갖출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
는다. ¶

정부 대응과 지원

성장 발전위해 적극 지원

民·官교량 역할 증진에 기대

徐承旭〈水產廳 施設局長〉

어항 업계의 숙원사업이
자 최대 현안이었던
던 어항법 개정이 마침내 일
단락,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한국어항협회 역
시 그 위상과 기능 및 역할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한국
어항협회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항법과
동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지만 개정된 어항법 가운데
특기할만한 내용중 하나는 한
국어항협회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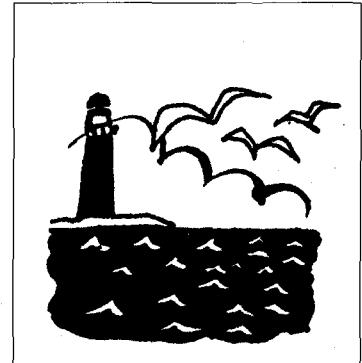
즉, 어항법 제38조제1항을
보면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
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

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항협
회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민법 제32조
에 의거해 설립된 자율단체
성격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
회가 특별법에 의한 법정단체
성격의 특수법인체로 전환되
게 된 것이 우선은 가장 큰
변화라 말할 수 있겠다.

한편 어항법 시행령 제32조
에서는 이에 관한 보다 구체
적인 기능과 역할, 다시 말해
한국어항협회가 앞으로 추진
해 나갈 업무를 보다 구체적
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
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협회 고유 업



무에 관한 사항, 둘째, 회원
의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
항, 셋째, 정부 업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먼저 협회 고유 업무에 관
한 사항은 지금까지 해온 것
처럼 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
와 이의 계몽·홍보 그리고 간
행물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앞으로 협회가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